

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2. 31.

강원특별자치도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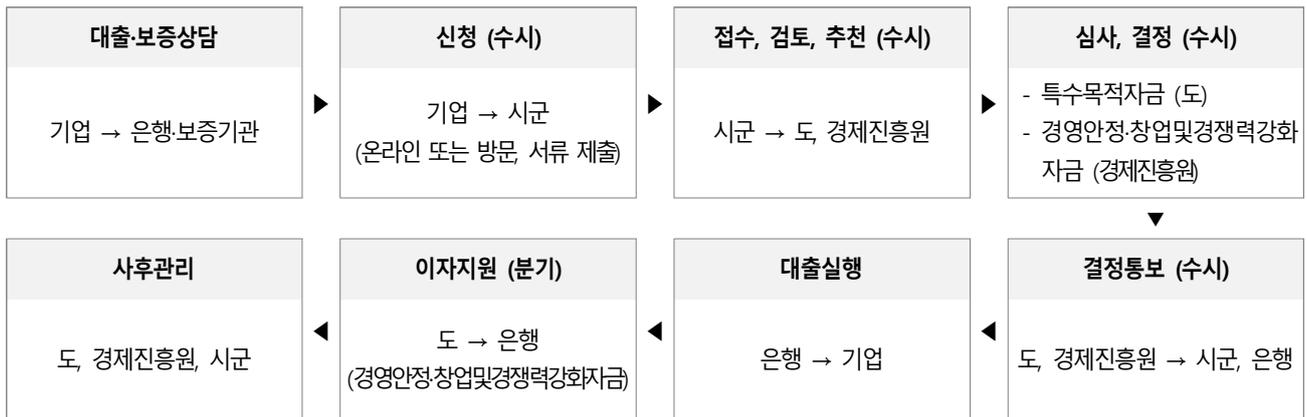
I. 지원 개요

- 지원기간 : 2026. 1. 2. ~ 자금 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
- 자금별 지원내용 [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]

자금명	지원업종	용자 재원	지원 내용	지원조건			
				대출한도	기간	지원 내용	기업 부담
경영안정 (3050억 원)	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제조업 등), 지식정보업(정보통신업 등), 그 밖의 업종 I(건설업 등), 그 밖의 업종 II(도·소매업 등), 그 밖의 업종 III(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)	은행 자금	이자 지원	운전자금 10억 원 (우대 시 최대 20억 원)	4년 (일시상환)	이자지원 2.0% (우대 시 2.5% 또는 3.0%)	대출 금리 - 이자 지원
	상업 및 경쟁력강화 (650억 원)			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제조업 등), 지식정보업(정보통신업 등), 그 밖의 업종 I(건설업 등)	시설자금 18억 원	9년 (4년 거치 5년 균등상환)	
특수목적 (300억 원)	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제조업 등), 지식정보업(정보통신업 등), 그 밖의 업종 I(건설업 등)	기금	용자 지원	운전·시설자금 8억 원 (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)	5년 (2년 거치 3년 균등상환)	고정금리 1.5%	1.5%

※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(일시상환)

○ 지원절차 [용자관리시스템: (기업용) hext.gwep.or.kr, (금융기관용) harus.gwep.or.kr]



○ 용자한도

-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용자한도: 5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
 - ▶ 용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용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
 - ▶ 과거 특별지원자금(코로나19, 산불,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, E-커머스 피해기업, 강릉 가뭄 피해기업)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
- (경영안정자금) 10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 - ▶ 단,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→ 매출액 기준 미적용
 - ▶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,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
-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18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 - ▶ 단, 이미 지출된 금액(계약금 등)은 제외
 - ▶ 개인 간 거래 시, 특수관계인(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)과의 거래 제외
-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
 - ▶ [운전자금]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(3년 이내)기업은 2억 원 한도

○ 지원 제외대상

- 납세 의무 이행 여부, 기업경영 상황 관련
 - ▶ 세금(국세, 지방세)을 체납 중인 기업
 - ▶ 휴·폐업 중인 기업(단,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)
 - ▶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
-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,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
 - ▶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·투기 조장업
 - ▶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
 - ▶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 - ▶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- 자금 허위·부정 신청, 용도 외 사용, 대출 미실행 관련
 - ▶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→ 용자추천 영구 제한
 - ▶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(임대수입, 용도전환, 후속계획 미실행 등) 기업 →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용자추천 제한
 - ▶ 용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(단,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)
 -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용자추천 제한
- 정부·지자체 정책자금, 중복지원 제한 관련
 - ▶ 최근 5년간 정책자금(정부, 지자체)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
 - ▶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(운전자금 신청 시)
 - ▶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용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(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)

○ 용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·승인 신청 사항

- 신청방법 :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,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
- 접수처 :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
- 신청대상
 - ▶ 신고대상 :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(상속에 따른 승계), 상호·소재지의 변경, 휴·폐업,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
 - ▶ 승인대상 :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, 법인 전환, 주생산업종의 변경, 계약대상·시설의 변경, 용자의 추천기한·취급은행의 변경, 자금의 종류·용도의 변경, 담보종류의 변경
 - ※ 창업및경쟁력강화·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
 - ※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% 이내만 가능

○ 사후관리 협조사항

- (기업) 자금사용 완료시, 1개월 내 '자금사용완료 보고서(서식7)' 제출
 - (시군)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(현지확인 등), 시스템에 등재
- (기업)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,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
 - 용도 외 자금 사용 시, 이차지원 중단·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

< 주요 사후관리 대상 >

-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(기업의 휴·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)
-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(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)
-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<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>
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
-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,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, 용자 승인내용·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기업이 휴·폐업하였거나,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
-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용자 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·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(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)
-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, 제조업 전환(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)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용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(운전자금 ↔ 시설자금)
-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용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
- 대표자,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·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
- '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'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

○ 지원문의: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

기관	담당부서	연락처
춘천시	기업지원과	(033)250-3088
원주시	기업지원일자리과	(033)737-2975
강릉시	기업지원과	(033)640-5854
동해시	경제과	(033)530-2310
태백시	경제과	(033)550-7175
속초시	지역경제과	(033)639-2352
삼척시	경제과	(033)570-3363
홍천군	경제진흥과	(033)430-2812
횡성군	경제정책과	(033)340-2046
영월군	경제과	(033)370-2740
평창군	경제과	(033)330-2750
정선군	전략산업과	(033)560-2969
철원군	경제진흥과	(033)450-4976
화천군	지역경제과	(033)440-2109
양구군	경제체육과	(033)480-7105
인제군	경제산업과	(033)460-4412
고성군	투자유치과	(033)680-3756
양양군	경제에너지과	(033)670-2690

※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: (033)249-2757 |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: (033)749-3305

II.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

1] 경영안정자금 (금융기관 협력자금)

○ 지원내용 :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

- 자금규모 : 3,050억 원
- 지원업종 :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·Ⅱ·Ⅲ *붙임 참고
- 용자한도 : 운전자금 **10억 원 한도**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 ※ 단,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(매출액 기준 미적용)

기업 유형	이자지원율	용자한도(이하)	용자기간	
○ 일반기업	2.0%	10억 원	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% 범위 내 (단,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*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)	
○ 도내 이전기업(3년 이내), 벤처기업 ○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○ Inno-biz, Main-biz 선정기업 ○ (예비)사회적, 마을기업(도지사 선정)	2.0%	11억 원		
○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장관 선정) ○ 마을기업(행정안전부장관 선정) ○ 가족친화기업(성평등가족부장관선정)	2.0%	12억 원		
○ 강원스타기업·강원바이오스타기업· 강원바이오유망기업(도지사 선정) ○ 수출기업, 창업초기기업 ○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트 투자기업	2.5%	10억 원		
○ 향토기업(도내 20년 이상 기업) ○ 여성기업(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) ○ 장애인기업(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) ○ 일자리 대상기업(도지사 선정) ○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(도지사 선정) ○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(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) ○ 상생결재 참여 기업 ○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○ 도 투자협약기업 ○ 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	2.5%	12억 원		
○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(도지사 선정)	3.0%	20억 원		
○ 접경지역 입주기업 - 양구·철원·화천·인제·고성 - 춘천, 속초	3.0% 2.0%	16억 원 16억 원		
○ 우대기업				최대 4년 (일시상환)

※ 대출금리: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

※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, 공고일 이후 채용과 용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

※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,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(공장등록 후 3년 이내)

※ 강원중소기업대상 및 강원수출대상 수상기업 이자지원을 추가우대(대상 1.0%, 우수 0.7%, 장려특별 0.5%)

▶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, 용자기간(최대 4년) 동안 추가 우대 *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

- 용자취급 금융기관(14): 도내 13개 금융기관,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

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SC제일은행, 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KDB산업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, 신협중앙회, MG새마을금고, 지역 농·축협, IM뱅크,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

- 유효기간: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연장 불가)

- 신청서류: 공통서류(신청서 등), 업종별 서류, 자금별 서류 *붙임 참고

2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(금융기관 협력자금)

○ 지원내용 :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

- 자금규모 : 650억 원
- 지원업종 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그 밖의 업종 I *붙임 참고
 ※ 단,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
- 용도제한
 - ▶ 부지매입비(개별입지)는 건축허가(건축신고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
 - ▶ 부지매입비(계획입지)는 산업(농공)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
 - ▶ 건물(공장)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
 - ▶ 단순 사무실, 일반창고,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
- 용자한도 : 시설자금 **18억 원 한도**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
기업 유형	이자지원율	용자한도(이하)		용자기간
○ 일반기업	2.0%	시설자금 18억 원	소요액(공급가)의 75%	9년 (4년 거치 5년 균등상환)

※ 대출금리 : 분기별 변동금리(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)

※ 지식산업센터 입주(예정)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(사무실 형태)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% 한도 내에서 지원함

※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,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. 단,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

- 용자취급 금융기관(9) : 전국 제1 금융기관

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KDB산업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, IM뱅크

- 유효기간 :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1회 6개월 연장 가능)

- 신청서류 : 공통서류(신청서 등), 업종별 서류, 자금별 서류 *붙임 참고

③ 특수목적자금

○ 지원내용 :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·시설자금

- 자금규모 : 300억 원

- 지원업종 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그 밖의 업종 I *붙임 참고

기업 유형	지원 조건
① 고용창출지원자금	•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(수상일로부터 2년)
② 산업단지지원자금	• 산업단지·농공단지 입주 예정, 또는 입주기업
③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	• 중소벤처기업부 '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'에 참여한 기업 ※ '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' 수혜기업은 제외
④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(30억 원 배정)	• 자연재해 및 FTA, 고환율, 원자재난,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(시장·군수 추천기업) * 원자재난: 최근 2년 내 30%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% 이상을 취급한 기업 * 물류피해: 재무제표의 '손익계산서상' '판매비및관리비' 항목 중에 '운반비'와 '차량 유지비'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%p 이상 증가한 기업
⑤ 관세영향기업지원자금 (70억 원 배정)	• 신청일 기준 1년 내 대미 직접수출 10만불 이상 실적 보유기업 ※ 기업별 최대 3억원 한도 내, 연간 대미 수출액 범위 내 지원
⑥ 기업위기대응자금 (30억 원 배정)	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•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'심각' 단계기업 *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• 폐광지역 기업
⑦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(30억 원 배정)	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(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) *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'육아휴직',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, '출산전후휴가', '배우자 출산휴가'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(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)
⑧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(20억 원 배정)	• 가족친화인증기업(성평등가족부장관 인증)
⑨ 긴급경영예비자금 (50억 원 배정)	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• '특별재난지역'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기업 • 코로나 등 전국 또는 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태에 대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

- 용자한도 :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* ⑤~⑧유형은 3억 원 한도

▶ [운전자금]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2억 원 한도

기업유형	금리	용자한도(이하)		용자기간
①~④	1.5% 고정금리	운전·시설자금 8억 원	[운전자금]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2 억 원 한도	5년 (2년 거치 3년 균등상환)
⑤		운전자금 3억원	-	5년 (2년 거치 3년 균등상환)
⑥~⑧		운전자금 1~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: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~30억 원 미만: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: 3억 원	-	2년 일시상환 * 분기말(3, 6, 9, 12월)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 년이 안될 수 있음
⑨		용자지원 조건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		

※ (⑦)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) 육아 재택근무·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, 그리고 대출기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(취업규칙, 근로계약서, 근무신청서, 명령서,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)

→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,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

※ (⑦)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) 현행법상 ‘육아휴직’,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’, ‘출산전후휴가’, ‘배우자 출산휴가’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(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(→근로자)와 지원금(→사업주)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※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(신청자금의 70%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)

창업초기(10억 원), 유망중소기업(15억 원), 백년기업(20억 원), 접경지역(양구·철원·화천·인제·고성) 입주기업(10억 원),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·강원스타기업·강원바이오스타기업·강원바이오유망기업(15억 원)

- 용자취급 금융기관(9) : 도내 제1 금융기관

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KDB산업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, IM뱅크

- 유효기간 :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)

- 신청서류 : 공통서류(신청서 등), 업종별 서류, 자금별 서류 *붙임 참고

■ 지원대상(공통): 경영안정자금·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·특수목적자금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	대 상 업 종	증 빙 자 료
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○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(상시고용 5인 이상*) * 단, 창업초기기업(3년 이내) 상시고용 미적용

C. 제조업	10~34	제조업	등록증
D. 전기,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	35114	태양력 발전업 (발전 용량 1,000kW 이상)	허가증
E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	37 381 3821 3822 3823 383 39	하수,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,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,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	허가증
H. 운수 및 창고업	491 492 493 49401 501 502 521 52913 5294 5299	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(개인,1인기업 제외) 도로화물 운송업(개인,1인기업 제외) 택배업(1인기업 제외)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	등록/허가증
N. 사업시설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	74 76390	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	등록/허가증
S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951 95211	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	등록/허가증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	대 상 업 종	증 병 자 료
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○ 지식정보업 (상시고용 5인 이상*) * 단, 창업초기기업(3년 이내) 상시고용 미적용

J. 정보통신업	581	서적,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등록/허가증
	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5911	영화,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	
	5912	영화,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	
	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
	612	전기통신업	
	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
	631	자료처리,호스팅,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	
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		
M. 전문,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01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	등록/허가증
	702	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	
	713	광고업	
	714	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
	71531	경영컨설팅업	
	721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	
	729	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
	732	전문 디자인업	

○ 그 밖의 업종 I(상시고용 5인 이상)

F.건설업	41	종합건설업	등록증
	42	전문직별 공사업	
I. 숙박 및 음식점업 中 관광숙박업	55101	호텔업	
	55103	휴양콘도 운영업	

※ ‘상시고용 인원’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,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,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.
(단,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)

■ 지원대상(개별): 경영안정자금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	대 상 업 종	증 빙 자 료
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○ 그 밖의 업종 Ⅱ(상시고용 5인 이상)

여행업	75210	여행사업	등록증 (관광진흥법)
유원시설업	91210	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	
관광편의시설업	5611	관광식당업	
	73301	관광사진업	
	55104	관광펜션업(민박업)	
	55104	한옥체험업(민박업)	
	47130	면세점업	
	75290	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	
	75210	관광여행알선	
관광사업 기타		종합휴양업,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국제회의업	
G.도매 및 소매업	45~47	도매 및 소매업	등록/허가증
I. 숙박 및 음식점업	55~56	숙박 및 음식점업 (단 55101, 55103 → 그 밖의 업종 I)	
N.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75992	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	
	7611	자동차 임대업	
S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96911	산업용 세탁업	
	96913	세탁물 공급업	

○ 그 밖의 업종 Ⅲ(상시고용 5인 이상)

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01	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	등록/허가증
	902	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	
	91111	실내경기장 운영업	
	91112	실외 경기장 운영업	
	91131	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	
	91132	체력 단련시설 운영업	
	91292	체육 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	
	91293	기원 운영업	
	912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	

※ ‘상시고용 인원’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,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,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.
(단,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)

■ 지원제외(공통):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

구분	한국표준산업 분류 번호	대 상 업 종
제조업	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中	"불건전"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中	"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"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中	담배 중개업
	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中	46333 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中	"불건전"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中	갬블링 및 배팅업